

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파주시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에 있어 제한하는 항목을 축소 조정하여 재정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주민공개 제한 사항중 “추진중인 사업, 정책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 (안제6조제2호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지방재정법

제118조3 (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,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,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-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규정에서 재정운영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함에 있어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하였으나 주민공개 제한사항을 축소시켜 재정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관련조례인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